

중간에납추계액신고서

① 상 호		② 사업자등록번호	- -						
③ 성 명		④ 주민등록번호	-						
⑤ 주 소	(전화번호:)								
⑥ 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:)								
중세 간액 예계 납산	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 간에납세액	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	⑨ 추 가 납 부 세 액	⑩ 중간예납 기준액 (⑦ + ⑧ + ⑨)					
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	⑪ 중간예납기 간(1월 ~ 6월)의 종합소득금액	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(⑪×2)	⑬ 이월 결손금	⑭ 종합 소득공제	⑮ 종합소득 과 세 표 준 (⑫-⑬-⑭)	⑯ 산출세액 (⑮×세율)	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(⑯/2)		
	중간에납기간 종료일까지의					중간에납 추계액			
	⑱ 감면 세액	⑲ 세 액 공제액	⑳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	㉑ 수 시 부 과 세 액	㉒ 원 천 징 세 액	㉓ 세액공제 · 기납부세 액 계 (⑱ ~ ㉒)	㉔ 계 (⑰ - ㉓)	㉕ 분납할 세액(2개 월 이내)	㉖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
㉗ 신 고 사 유	☐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☐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㉔ 중간예납추계액 ÷ ⑩ 중간예납기준액 = %								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65조제3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 고 인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 하

구비서류	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
------	----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⑨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」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⑬이월결손금란: 기장(記帳)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.
3. ㉗신고사유란: 해당되는 □안에 "√"표시를 하며,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㉔중간에납 추계액 계를 ⑩중간에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